

고성군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

(의안번호 제489호)

심사보고서

1998. 7. 30.

총무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1998. 7. 15 고성군수

나. 회부일자 : 1998. 7. 18

다. 상정·의결일자 : 1998. 7. 29 상임위원회 상정·의결

2. 제안이유

- 국가정보화 전략과 연계하여 고성군의 지역특성에 맞는 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역정보화 추진체계 근거를 마련코자 함.

3. 주요골자

-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(안 제4조, 제5조)
-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, 지역정보화본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, 제15조)
- 전산정보자료 관리이용, 업무정보화 및 표준화에 관한 사항(안 제19조, 제21조)
- 보안관리 및 정보보호에 관한 사항(안 제28조, 제29조)
-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에 관한 사항(안 제32조)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행정자치부로 부터 시달된 지역정보화촉진조례표준안에 근거한 것으로 고성군의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키 위하여 기본계획수립, 협의회 및 지역정보화 본부 설치운영, 정보자료의 표준화, 교육, 예산 등 관련규정을 제정함은 타당하다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지역정보화 교육에 따른 장비확보 예산 및 전문인력이 확보되어 있는지
- 답 : 인력은 전산직, 통신직 등이 확보되어 있으며, 제2청사(구 경찰서)가 준공되면 지역정보화 산 교육장을 마련하여 지역주민 및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이며, 장비확보는 현재 컴퓨터를 금년내 15대 확보되겠으나 내년에는 20대 정도 추가 확보할 계획임.
- 문 : 안 제7조 제3항 중 민간중심으로 지역정보센타 운영시 예산의 범위내 지원의 명시 필요성은
- 답 : 21세기 지역정보화에 대응키 위하여 사전 대비책으로 관련 규정을 명시하였음.

6. 토론

- < 안 제7조 제3항을 삭제하는 의견 >
- 찬성 : 공공의 목적으로 지역정보화 사업추진시 예산의 범위내 지원함이 타당하며 예산지원시는 별도 의회에서 예산심의 가능하므로 명시하여도 관련없음.
 - 반대 : 안 제7조 제3항은 안 제7조 제2항으로 충분히 본 내용을 대체할 수 있어 필요성이 없으므로 삭제 필요.

7. 심사결과

- 1998. 7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